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 결

사건 2022고단1853, 2583(병합)

가. 업무상횡령

나. 업무상과실장물취득

다. 사기

2022초기941, 942, 1302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가.다. A

주거 <주소>

등록기준지 <주소>

2.나. B (<주민등록번호>), 고물상 영업

주거 <주소>

등록기준지 <주소>

검사 김동진(기소), 김소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E(피고인 A를 위한 국선)

변호사 F(피고인 B를 위한 국선)

배상신청인 1. G 주식회사

2. H[주소: <주소>]

판결선고 2023. 12. 6.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

치한다.

피고인 B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배상신청인 G 주식회사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피고인 A은 배상신청인 H에게 20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2022고단1853』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4. 4.경부터 피해자 G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화물 배송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3.경 피해자 회사 소유 화물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주소>에 있는 N공장으로 가서 담당자로부터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4,992,480원 상당의 엔진부품 철 부자재를 받아 보관하던 중 피해자 회사 공장으로 배송하지 않고 그 무렵 <주소>에 있는 I에서 507,000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2. 6. 8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69,110,000원 상당의 철 부자재 등을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주소>에서 'I'라는 상호로 고철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3.경 위 사업장에서 위 A로부터 위와 같이 횡령한 고철을 매입하게 되었다.

고철 매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판매자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고, 고철의 출처 및 매도의 동기 등을 잘 살펴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매입하는 제품이 새제품이었음에도 출처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판매자의 인적사항도 확인하지 않는 등 장물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위 A로부터 철 부자재 등을 507,000원에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2. 6. 8.경까지 총 9회에 걸쳐 위 A이 횡령한 철 부자재 등을 합계 6,597,350원에 매입하

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2583』(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3. 7. 16:50경 대구 <주소>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하여 "병원비가 없는데 20만원만 빌려주면 이틀 뒤에 월급날이니까 바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빌린 돈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이틀 후에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3. 7. J 명의의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로 20만원을 송금받아 재물을 취득하였다.<각주1>

증거의 요지

『2022고단1853』

-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1. 거래명세서, 사업자 등록증 등
-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 1. 피해품 사진

『2022고단2583』(피고인 A)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가.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상횡령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점), 각 징역형 선택
- 나. 피고인 B: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내지 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1항,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에게 약 6,900만 원의 손해를 가하였으나, 그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 A에게는 동종 전력이 없고, 횡령한 물품 중 일부가 수사과정에서 압수되어 해당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다.

피고인 B는 동종 전력이 없고, 피고인 A과 이 사건 범행 2년 전까지 거래관계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그의 업무상 과실이 중하다고 평가되지는 않는다. 또한 매수한 장물 중 일부가 수사과정에서 압수되어 해당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미미하다.

위 특별한 사정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사항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차윤제

범죄일람표1

연번	일시 및 장소	피해자	피해금액	범죄사실	
1	'22 5. 3. 15:10~15:30경 <주소>	G㈜ 대표 K	철 부자재 등 4,992,480원	N 공장으로부터 받은 철 부자재 등을 고물상에서 임의로 처분함	
2	'22 5. 6. 15~16시경 <주소>	"	철 부자재 등 6,854,520원	u	
3	'22. 5. 11. 15:30~15:50경 <주소>	"	철 부자재 등 6,854,520원	и	
4	'22 5. 18. 16:00~16:20경 <주소>	u	철 부자재 등 6,854,520원	и	
5	'22. 5. 19. 16:20~16:40경 <주소>	и	철 부자재 등 6,854,520원	и	
6	'22. 5. 23. 16:00~16:20경 <주소>	и	철 부자재 등 8,938,480원	"	
7.	'22 5 31 16:00~16:30경 <주소>	u	철 부자재 등 13,709,040원	u	
8	'22. 6. 3. 16:00~16:10경 <주소>	"	철 부자재 등 7,197,400원	"	
9	'22. 6. 8. 15:55~16:10경 <주소>	u	철 부자재 등 6,854,520원	u	
합계	69,110,000원				

범죄일람표2

연번	일시 및 장소	피해자	매입금액	범죄사실
1	'22 5. 3. 15:10~15:30경 <주소>, I	G(?)	507,000원	위 A 이 황령한 철 부자재 등 975kg이 새제 품이었음에도 출처, 판매자 인적시항 등을 확인
	11 = 7,1	대표 K		하지 않은 업무상과실로 매압하여 취득함
2	'22. 5. 6. 15~16시경	" 698,000원	위 A 이 황령한 철 부자재 등 1,380kg이 새제 품이었음에도 출처, 판매자 인적사항 등을 확인	
	<주소>,		0,0,000 12	하지 않은 업무상과실로 매입하여 취득함
3	'22. 5. 11. 15:30~15:50경			위 A 이 황령한 철 부자채 등 1,430kg이 새제
	<주소>,	u	680,000원	품이었음에도 출처, 판매자 인적시항 등을 확인하지 않은 업무상과실로 매입하여 취득함
4	'22 5. 18. 16:00~16:207링			위 A 이 황령한 철 부자채 등 1,430kg이 새제
	<주소>,	" °\f624,900\f		품이었음에도 출처, 판매자 인적시항 등을 확인하지 않은 업무상과실로 매압하여 취득함
5	'22. 5. 19. 16:20~16:40건			위 A 이 황령한 철 부자채 등 1,410kg이 새제
	<주소>,ㅣ	" 658,000원		품이었음에도 출처, 판매자 인적시항 등을 확인 하지 않은 업무싱과실로 매입하여 취득함
6	'22. 5. 23. 16:00~16:20경			위 A 이 황령한 철 부자채 등 1,875kg이 새제
	<주소>,	u	850,000원	품이었음에도 출처, 판매자 인적시항 등을 확인 하지 않은 업무상과실로 매입하여 취득함
7	'22. 5. 31. 16:00~16:30경			위 A 이 황령한 철 부자재 등 2,885kg이 새제
	<주소>,	1 161000		품이었음에도 출처, 판매자 인적시항 등을 확인 하지 않은 업무상과실로 매압하여 취득함
8	'22 6. 3. 16:00~16:10 ⁷ 3			위 A 이 황령한 철 부자재 등 1,535kg이 새제
	<주소>,	"	684,000원	품이었음에도 출처, 판매자 인적시항 등을 확인 하지 않은 업무상과실로 매압하여 취득함
9	'22. 6. 8. 15:55~16:10 ⁷			위 A 이 황령한 철 부자재 등 1,360kg이 새제
	<주소>,	u	약625,600원	품이었음에도 출처, 판매자 인적시항 등을 확인 하지 않은 업무상과실로 매압하여 취득함
합계			약6,597,35 0원	

각주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채무 면제 이익 취득 사기를 위 20만 원 교부 사기로 변경하였다.